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

2024.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 회의 개최 원칙

▣ 활동기간: 2024. 6. 12.~2025. 6. 11.(1년)

-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회의 진행 경과를 살펴 추후 논의 예정

▣ 월 1회 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함

-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월 2회 개최

2. 회의 개최 일정

▣ 매달 두 번째 수요일(원칙)

- 휴일 등 일정 고려하여 2회(화요일), 5회(세 번째 수요일) 날짜 조정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7/16 (화)	8/14 (수)	9/11 (수)	10/16 (수)	11/13 (수)	12/11 (수)	1/8 (수)	2/12 (수)	3/12 (수)	4/9 (수)	5/14 (수)	6/11 (수)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3. 회의 운영 방법

▣ 개요

- 위원회, 전문위원(3개 연구반), 실무지원단 운영

<각 기구별 수행 기능>
- **위원회**: 안건 심의, 건의문 의결
- **전문위원 연구반**: 주제별 자료의 수집·조사·연구·검토 및 그 결과보고
- **실무지원단**: 자료 제공, 보고서 작성, 본회의 및 전문위원 연구반회의 행정지원

● ①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전문위원 연구반 검토 요청 ⇨ ② **전문위원** 연구·검토, 결과보고 ⇨ ③ **위원회** ⅰ) 심의(필요시 속행), ⅱ) 건의안 의결

<진행 단계별 위원회 보고 방식>
■ **설명자료**: 위원회에 안건 설명을 위한 자료
■ **최종보고서**: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위한 보고서[건의문(안) 포함]
■ **추가보고서**: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 연구·검토를 지시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 [1] 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및 전문위원 연구반 검토 요청

● 주무위원으로부터 안건의 논의 필요성 및 쟁점 등이 담긴 설명자료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에 논의할 안건 상정

●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 연구반에 연구·검토 요청

▣ [2] 전문위원 연구·검토

● 실무지원단이 작성한 기초보고서로 연구반 논의

●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무위원 주도로 실무지원단이 위원회 결과보고를 위한 최종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주무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 받은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건의안 의결

● 필요시 속행 또는 전문위원 연구반 추가 논의 지시(추가보고서 작성·보고)

4. 안건 논의 일정(안)

시기	논의과제
7월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감정제도 개선
8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 9월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 예정